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한 선 미 의원)

의안 번호	25-81
----------	-------

발의년월일: 2025. . .

발의자: 한선미, 권인순, 안미자, 오욱자,
차해영, 최은하, 홍지광

1. 제정 이유

성인 및 청소년에게도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3. 관계법령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조의3

나. 「청소년 보호법」 제5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5. 8. 5. ~ 25. 8. 11.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1.>

1.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5. 10. 2.] 제2조의3제3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35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4조제4호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4. 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의약과 조영미
연 락 처	02-3153-9131